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31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권향엽 · 김문수 · 안태준

김현정 · 문진석 · 김재원

조계원 · 최혁진 · 박지원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을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u><신 설></u>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 ⑥ (생 략)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 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 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 을 신청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⑧·⑨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 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 받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또는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	--